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4300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78,2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45,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967,3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92,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시 [redacted]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제약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 주	대주주와 관 계	2015.01.01.		2015.12.10.		증감(%)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합 계			242,000	100	242,000	100	
과점주주	소 계		133,714	55.25	156,095	64.50	9.25
	A	본인	49,847	20.60	72,228	29.85	9.25
	D	배우자	15,579	6.44	15,579	6.44	
	E	자	9,519	3.93	9,519	3.93	
	F	자	5,335	2.20	5,335	2.20	
	G	자	11,835	4.89	11,835	4.89	
	H	사위	41,599	17.19	41,599	17.19	
기타주주	소 계		108,286	44.75	85,905	35.50	△9.25
	I	기타	22,381	9.25	-	-	△9.25
	기타주주	기타	85,905	35.50	85,905	35.50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5. 12. 10. I로부터 C 주식 22,3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C에 대한 지분율이 20.60%에서 29.85%로 증가함에 따라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5.25%에서 64.50%로 증가하였다고 보아, 각 C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C에 대한 지분율 증가분 9.25%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7. 2. 10. 취득세 9,978,2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845,410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10,823,640원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7. 2. 13. 취득세 18,967,31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592,820원(가산세 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1

함)의 합계 20,560,130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이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I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 12. 10.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1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 12. 10.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와 I가 2015. 12. 10. '원고가 I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해지약정서를 작성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C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자신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청구소송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 실제로도 I가 C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나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I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I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1

거가 없다.

나) I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개서하여 주면서 원고로부터 그 양도대금이나 기타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런데 만약 I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넘겨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I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9731호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원고가 2015. 12. 10. I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강효원

판사 김현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1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